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9. 26.

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황국주 의원 외 6명(강한곤, 박정환, 도하석, 박왕규, 정창근, 이진환)
- 발의일자: 2024. 9. 12.
- 회부일자: 2024. 9. 12.
- 상정 및 의결: 제30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4. 9. 26.)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일수를 개정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적용하는 등 공무원 특별휴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기재직휴가 대상 및 재직기간, 휴가 일수 확대(안 제14조제3항)
-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안 별표 5)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 → 3일

4. 참고사항(관계법령 등)

-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별표 1
- 비용추계: 비대상
- 입법예고(2024. 9. 12. ~ 9. 23.) 결과: 의견 없음.

5.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 개정(2024. 7. 2.)됨에 따라 경조사 휴가일수를 변경하고, 저연차 공무원의 장기근속 유도과 사기진작을 위해 장기재직휴가를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14조제3항은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대상 재직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재직기간별 휴가일수를 최대 50일에서 60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휴가일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재직기간	장기재직 휴가일수		비 고
	현행조례	개정조례안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재직기간별 휴가일수 최대 50일 → 6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	20일	
20년 이상		3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0년 이상	10일		

- 안 별표 5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 규정하였음.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공무원노동조합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장 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재직휴가 대상 재직기간을 하향 조정하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이탈을 방지하고 공직 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6. 질의·답변 및 토론 요지: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